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53
------------------	-----

발의연월일 : 2011. 10.

발의의원 : 김옥순 의원(대표발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제를 도입하고, 본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설명제 도입(안 제19조제2항)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

### 나. 조례안 예고제 신설(안 제20조의2)

-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달성군 규칙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6.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p> <p>2. 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p> <p>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p> <p>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p> <p>5.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p> <p>6.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p>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

## 서명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김옥순	김옥순	2022
김길수	김길수	2022